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남창진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700호

다. 제출일자 : 2014. 8. 26.

라. 회부일자 : 2014. 8. 31.

2. 제안사유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8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1조, 제25조, 제26조, 제3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민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가 도입 되도록 「민법」이 개정¹⁾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민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으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피특정후견인’이 제외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구분〉

구 분	요 건	보호자	보호자의 권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관련 규정
피한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으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	한 정 후견인	· 동의권 · 대리권 · 취소권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대리행위·유언행위	민 법 제12조, 13조, 제14조, 제929조
피성년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	성 년 후견인	· 대리권 · 취소권	없음	민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피특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	특 정 후견인	· 대리권	없음	민 법 제14조의2, 제959조의11

1) 시행 2013.7.1.[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문체로 조례 용어를 다듬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²⁾을 제출하였음

2) 교통정책과-19057(2015.9.7.)